

의안번호	제 504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

발 의 자	김국기 의원
발의연월일	2020년 8월 26일

충청북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

(김국기 의원 발의)

의안 번호	504
----------	-----

발의연월일 : 2020년 8월 26일
발 의 자 : 김국기 의원
찬 성 자 : 박성원, 최경천, 김영주,
심기보, 이수완, 임동현 의원

1. 제안 이유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의 1회용품 사용 제한을 위해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점점 심화되고 있는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예방하고 환경을 보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 제2조)
- 나. 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 다. 1회용품 사용 제한 추진계획의 수립 등(안 제4조)
- 라. 1회용품 사용 제한(안 제5조)
- 마. 실태조사(안 제6조)
- 바. 1회용품 사용 제한을 위한 교육·홍보(안 제7조)
- 사.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 아. 시행규칙(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관계부서 협의: 충청북도교육청 총무과

라. 기 타

1) 입법예고: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20-66호

(2020. 8. 20. ~ 2020. 8. 24.)

2)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 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충청북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행정기관”이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4. “생분해성수지제품”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을 받았거나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맞는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제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제한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1회용품 사용 제한에 관한 학생, 교직원 대상 교육·연수
3. 1회용품 사용 제한에 관한 홍보
4. 유관 기관과의 협력
5.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제한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1회용품 사용 제한) ①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상황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경우에는 생분해성수지제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를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교육·홍보)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학생, 교직원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제한을 위한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1회용품 사용 제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5. 27.] [법률 제16611호, 2019. 11. 26., 일부개정]

제2조(정의)

15.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6. “생분해성수지제품”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環境標識) 인증을 받았거나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맞는 제품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1.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2.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식품 제조업·가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6. 그 밖에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업종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3. 8. 13.>

1.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판매·배달하는 경우
2.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3.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8. 13.>

[전문개정 2008. 3. 21.]

제10조의2(1회용 봉투·쇼핑백 판매대금의 용도) 제10조에 따라 1회용 봉투·쇼핑백을 판매한 사업자는 판매대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1. 고객이 사용한 1회용 봉투·쇼핑백을 되가져올 경우의 현금환불
2. 고객이 장바구니를 이용할 경우의 현금할인
3. 장바구니의 제작·보급
4. 1회용품의 사용억제를 위한 홍보
5. 전년도의 1회용 봉투·쇼핑백 판매금액보다 고객에게 환불 또는 현금할인한 금액이 많은 경우 그에 대한 보전
6.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

[본조신설 2007. 5. 11.]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5. 27.] [대통령령 제30618호, 2020. 4. 14., 일부개정]

제5조(1회용품) 법 제2조 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별표 1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4. 6.]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09.4.6>
1회용품(제5조 관련)

1. 1회용 컵·접시·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을 말

한다)

2. 1회용 나무젓가락
3.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한다)
4. 1회용 수저 · 포크 · 나이프
5. 1회용 광고선전물(신문 · 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한다)
6. 1회용 면도기 · 칫솔
7. 1회용 치약 · 샴푸 · 린스
8. 1회용 봉투 · 쇼핑백(환경부장관이 재질, 규격, 용도, 형태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9. 1회용 응원용품(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을 말한다)
10.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한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 5. 27.] [환경부령 제869호, 2020. 5. 27., 일부개정]

제3조의2(생분해성수지제품)법 제2조 제1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 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1. 10. 28., 2013. 3. 23.>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2.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 · 고시하는 시험기관으로부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생분해성수지제품에 대한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받은 제품

[전문개정 2009. 4. 7.]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약칭: 환경기술산업법)

[시행 2020. 3. 31.] [법률 제17183호, 2020. 3. 31., 일부개정]

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 ① 환경부장관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기기, 자재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비하여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그 제품에 대하여 환경표지의 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제품의 선정·폐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20조에서 이동 <2008. 3. 21.>]

□ 초·중등교육법

[시행 2019. 12. 3.] [법률 제16672호, 2019. 12. 3., 일부개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유아교육법

[시행 2020. 3. 1.] [법률 제16875호, 2020. 1. 29.,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3. 24., 2012. 3. 21.>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충청북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충청북도교육감 소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비용추계서 작성 생략에 해당됨

4. 작성자: 행정국 총무과장 박승렬